

[무배당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VIP형]2307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질병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VIP형]2307

(2) 회사는 만기 재가입시 보험종목의 명칭에 재가입형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다르게 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최초가입

| 구 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
| 보통약관 | 암진단금Ⅲ(간편심사) | 10년 | 40세~59세 | 월납 연납 | | |
| | 암사망(간편심사) 통풍진단금 | 10년 | | | | |
| | 대상포진진단금 | | | | | |
| | 대상포진눈병진단금 | | | | | |
| | 루게릭병진단금 | | | | | |
| | 파킨슨병진단금 | | | | | |
|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Ⅱ(간편심사) | 10년 | | | | |
| | 3대특정암진단금Ⅱ(간편심사) | | | | | |
| | 암진단후생활자금Ⅱ(5년,간편심사) | | | | | |
| | 암수술(간편심사) | | | | | |
|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간편심사) 알츠하이머병진단금 | | | | | |
| |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 10년 | 40세~59세 | | | |
| | 뇌출증진단금(간편심사) | | | | | |
| |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사) | | |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간편심사) | | | | | |
| 제도성 특별약관 |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편심사) | | | | | |
| | 보이스피싱손해 | 10년 | 40세~59세 | | | |
| | 특정신체부위및질병보장제한부인수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만기재가입 장애인전용보험전환 | - | - | - | | |

(2) 만기재가입

| 구 분 |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보험료 납입주기 | | | | |
|-------------|----------------------|----------|-------------|-------------|-------------|-------|--|--|--|
| 보통약관 | 암진단금Ⅲ(간편심사) | 10년 | 전기납 | 50세~90세 | 월납 연납 | | | | |
| | | 1년~9년 | | (100-보험기간)세 | | | | | |
| | 암사망(간편심사) | 10년 | | 50세~70세 | | | | | |
| | 통풍진단금 | | | (80-보험기간)세 | | | | | |
| | 대상포진진단금 | | | | | | | | |
| | 대상포진눈병진단금 | | | 50세~90세 | | | | | |
| | 루게릭병진단금 | | | | | | | | |
| | 파킨슨병진단금 | | | | | | | | |
|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Ⅱ(간편심사) | | | (100-보험기간)세 | | | | | |
| | 3대특정암진단금Ⅱ(간편심사) | | | | | | | | |
| 특별약관 | 암수술(간편심사) | | | | | | | | |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간편심사) | 1년~9년 | | | | | | | |
| | 암진단후생활자금Ⅱ(5년,간편심사) | | | | | | | | |
| | 알츠하이머병진단금 | | | | | | | | |
| |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 | | | | | | | |
| | 뇌졸증진단금(간편심사) | 10년 | 50세~90세 | | | | | | |
| |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사) | | (100-보험기간)세 | | | |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간편심사) | | | | | | | | |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편심사) | | | | | | | | |
| | 보이스피싱손해 | | 50세~90세 | | | | | | |
| | | | | | | 1년~9년 | | | |
| 제도성 특별약관 |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보장제한부 인수 | - | - | - | - | | | | |
|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 | | | | | | | |
| | 제재위반 부담보 | | | | | | | | |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 | | | | | | | |
| | 만기 재가입 | | | | | | | | |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 | | | | | | |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만기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전 소멸된 보장은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며, 잔여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 만큼 보험기간 적용함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우량체 할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서(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기초로 작성한 우량체 할인 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제출하여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회부터 할인 대상 담보의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가. 고혈압이 없는 경우

-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나. 당뇨병이 없는 경우
 - 당뇨병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함.
 - 가. '(1)'에서 정한 우량체 할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나. 청약시점에 우량체 할인 신청 후 할인 전 보험료로 계약 체결한 경우
 - 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에서 정하는 건강검진결과서(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기초로 작성한 우량체 할인 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3) '(1), (2)'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혈압 및 당뇨병이 모두 없다고 고지하고 우리회사의 일반암보험에 가입된 적 있는 계약(회사가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당뇨병 보유여부를 알 수 있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이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상품의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지 여부를 재심사하고 해당 질병이 없는 경우에 5%를 할인하여 영수함.
-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하는 보험료 할인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에도 충족한다고 상기 자료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차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중지할 수 있음.
- (5) '7.(1)'에 따른 우량체 할인은 기본계약인 '암진단금Ⅲ(간편심사)'와 특별약관 중 '암사망(간편심사)',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Ⅱ(간편심사)', '3대특정암진단금Ⅱ(간편심사)', '암진단후생활자금Ⅱ(5년,간편심사)', '암수술(간편심사)'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간편심사)',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뇌졸증진단금(간편심사)',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사)',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간편심사)',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편심사)'에 한하여 적용함.(이하 '간편심사 할인 대상 약관'이라 함)

8.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 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 나.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만기재가입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 (2) 회사는 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며, 계약자가 재가입 시점에서 아래 재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재가입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음.
 - 가. 피보험자 연령이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나.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었을 것
 - 다. 재가입 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 (3) 계약자는 '(2)'의 재가입 직전계약 외 암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판매 상품에 추가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을 거절 할 수 있음. 또한, 계약자는 암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판매상품에 추가된 담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제외한 재가입 안내만을 받을 수 있음.
- (4) '(2)'의 '재가입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한 경우 아래에 정한 사항을 따름.
 - 가. 재가입되는 계약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및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재가입일 현재의 제도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함.
 - 나. 재가입전 계약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담보의 가입은 불가함.

18. 기타

- (1) 동 상품은 청약일 현재 당사 암진단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정상 유지중인 가입자(피보험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함
- (2)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함

- 가.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나.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다.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 (3) 「무배당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VIP형]2307」는 ‘간편심사’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청약서 사용)
- 간편심사 :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연령자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 함.
- (4)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5)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간편심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별첨)에 의한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7)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8)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 (9)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 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 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 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 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

(불임)

간편심사 및 보험료 납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간편심사 관련]

1. 간편심사 : 의적결합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2.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하는 피보험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보험료 납입 관리]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서(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 또는 건강검진결과서(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우량체 할인 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우량체 할인 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를 제출하여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우량체 할인 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제출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까지 이 계약 중 ‘간편심사 할인 대상 약관’ 영업보험료 5%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합니다.
 - (1)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 없을 것
 - (2)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이 없을 것

[서류 작성형]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옆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서명)

[전화 녹취형]

위 내용에 대하여 상담원 은(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 은(는)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우량체 할인 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우량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 보험료 할인 조건* | 검진(검사) 소견 | 충족 여부 |
|-----------------------|-----------|----------|
| '고혈압' 관련 약물 복용 없음 | O / X | |
| ▶ 수축기 혈압 (139mmHg 이하) | mmHg | 충족 / 미충족 |

| | |
|---------------------------------|--------------|
| ▶ 이완기혈압 (89mmHg 이하) | <i>mmHg</i> |
|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 받은 적 없음 | <i>O / X</i> |
| '당뇨병' 관련 약물 복용 및 인슐린 주사투여 없음 | <i>O / X</i> |
| ▶ 공복혈당 (125mg/dl 이하) | <i>mg/dl</i> |

1. 상기 내용은 다음의 검진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검진(검사)일자 | 검진(검사) 기관(병원)명 | 기관(병원) 소재지 |
|----------|----------------|------------|
| | | |

2. 보험회사는 상기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 검진결과지 제출 ("보험료 할인조건" 이외의 항목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나. 진료기록 열람에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택 1 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3.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험료 할인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에도 충족한다고 상기 자료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차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

4. 보험료 할인 조건에 대하여 상담원 ooo은(는) __년 __월 __일 보험계약자 ooo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 ooo은(는)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오

우량체 할인조건 설명(녹취) 완료